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3. 18 :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도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된 교육원장의 소관사무 중 도민교육관련 사무를 추가 명시하고
- 행정자치부의 사업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을 「종합건설사업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무원교육원장 소관사무 중 「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건설종합본부 명칭 변경
 - “건설종합본부”를 ⇒ “종합건설사업소”로 함.
 - ※ 명칭 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 (3개 조례)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 중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소관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 제207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구 설치 및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를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을

- 1982. 5.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변경 후
- 1997.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통합됨에 따라
도민교육원 설치조례가 폐지되었는바

○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된 후 소관사무 조정 없이
농민교육을 실시한 사유와

2002년 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영농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되어있으나,
도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대상 및 범위,

교육원의 설치근거 및 명칭사용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 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 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건설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현행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사용

※ 명칭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3개 조례)을 삭제함.

7.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3. 18.

제안자 : 송은섭 위원외

1. 수정이유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기관의 명칭이 자주 변경되어 도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명칭변경에 따른 3,016개의 안내 표지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 부담이 수반되고 직원들의 사기저하 예상과, 향후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고, 광역시의 본부명칭 사용 추세에 따라 명칭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건설본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현행명칭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사용

※ 명칭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3개 조례)을 삭제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장제2절의 제목 및 제35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및 제38조중 “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종합건설사업소”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본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7조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조 문 대 비 표

□ 조례명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사 업 소	제4장 사 업 소
제2절 <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u>	제2절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
제3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제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u> (이하 "종합건설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u>종합건설사업소</u> 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5조(설치) ①.....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 (... "건설종합본부"...)..... ② <u>건설종합본부</u>
제36조(본부장) <u>종합건설사업소</u> 에 <u>본부장</u> 을 두고, <u>본부장</u> 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본부장) <u>건설종합본부</u> ... 본부장... ... 본부장...
제37조(소관사무) <u>종합건설사업소</u>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1. (생략)	제37조(소관사무) <u>건설종합본부장</u> 1. - 11. (개정안과 같음)
제38조(지소) <u>종합건설사업소</u> 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지소) <u>건설종합본부</u>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2조 (삭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1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도 자체 종합감사시 지적된 교육원장의 소관사무중 도민교육관련 사무를 추가 명시하고
- 행정자치부의 사업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건설종합본부」의 명칭을 「종합건설사업소」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무원교육원장 소관사무중 「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건설종합본부 명칭 변경
 - “건설종합본부”를 ⇒ “종합건설사업소”로 함.
 - ※ 명칭 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 (3개 조례)

□ 의안전문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4장제2절의 제목 및 제35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충청북도 종합건설사업소”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 및 제38조중 “건설종합본부”를 각각 “종합건설 사업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본문중 “본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제37조 각호의의 부분중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종합본부장”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②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③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를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제4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중 “건설본부장”을 각각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본문·단서,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중 “건설본부”를 각각 “종합건설사업소”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충청북도 건설종합본부장”을 각각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 조 례 명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장 직 속 기 관</p> <p>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p>	<p>제3장 직 속 기 관</p> <p>제2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p>
<p>제19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p> <p>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p> <p>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p> <p>4. 교육성적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p>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p> <p>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p>	<p>제19조(소관사무).....</p> <p>.....</p> <p>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p> <p>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p> <p>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p> <p>4. (삭 제)</p> <p>5. (삭 제)</p> <p>6.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 업 소</p> <p>제2절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p> <p>제35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내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도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로·하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이하 “건설종합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건설종합본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p> <p>제36조(본부장) <u>건설종합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u>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37조(소관사무) <u>건설종합본부장은</u>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11. (생략)</p> <p>제38조(지소) <u>건설종합본부의 소관사무를</u>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사 업 소</p> <p>제2절 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p> <p>제35조(설치) ①..... <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u>(... “종합건설사업소”.....) ②<u>종합건설사업소</u>.....</p> <p>제36조(소장) <u>종합건설사업소</u>... <u>소장</u>..... ... <u>소장</u>.....</p> <p>제37조(소관사무) <u>종합건설사업소장</u>..... 1. - 11. (현행과 같음)</p> <p>제38조(지소) <u>종합건설사업소</u>.....</p>

□ 조례명 :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p> <p>②관리자는 <u>건설종합본부장</u>으로 보하도록 한다.</p>	<p>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 조례명 :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시험이용의 제한)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u>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4조(시험이용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 조례명 : 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건설기계는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u>(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에 집중 관리하고 <u>건설본부장</u>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p> <p>②<u>건설본부장</u>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p> <p><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u>(..... "종합건설사업소".....).....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②<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등) <u>건설본부장</u>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 점검수리등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조(건설기계기술검사 및 정비등)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p>
<p>제4조(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는 <u>건설본부</u>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p>	<p>제4조(건설기계 사용) <u>종합건설사업소</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 수립) <u>건설본부장</u>은 매년도 3월말까지 <u>건설본부</u>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건설기계투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제5조(건설기계투입계획 수립) <u>종합건설사업소장</u>..... <u>종합건설사업소</u>가</p>
<p>제6조(건설기계 사용 설계) <u>건설본부</u>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중 건설기계 부문공사는 <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건설기계 사용 설계) <u>종합건설사업소</u>..... <u>종합건설사업소</u></p>
<p>제7조(건설기계사용신청) <u>건설본부</u> 보유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건설본부</u>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중 민간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외에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7조(건설기계사용신청) <u>종합건설사업소</u> <u>종합건설사업소장</u>..... <u>종합건설사업소</u></p>

현행	개정안
<p>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p> <p>① (생략)</p> <p>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u>건설본부장</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 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건설본부장</u>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 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 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p> <p>①임차인의 과실로 사용 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u>건설본부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u>건설본부장</u>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p> <p>③<u>건설본부장</u>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p> <p>①.....</p> <p>.....</p> <p>.....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②.....</p> <p>...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③<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사용료 구분등) ① (생략)</p> <p>②건설본부에서 자재 도로보수 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용료 구분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u>종합건설사업소</u></p> <p>.....</p> <p>.....</p> <p>.....</p> <p>.....</p>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 건설기계사용료는 별표 2의 건설기계사용료 산출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용료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u>건설본부장이</u> 정하여 운영한다.</p>	<p>제16조(사용료 산출기준)</p> <p>.....</p> <p>.....</p> <p>.....</p> <p>.....</p> <p><u>종합건설사업소장</u></p>
<p>제17조(사용료 감면) ①<u>건설본부장은</u> 별표 3에 의한 건설기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가동중진을 위하여 건설기계 사용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7조(사용료 감면) ①<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 1월 당 200시간으로 하며 <u>건설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사용</u>. 다만, 건설기계 운반용 건설기계는 제외</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p> <p>.....</p> <p>.....</p> <p>1.</p> <p>.....</p> <p>.....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용료 징수) ①<u>건설본부장은</u> 도 및 도산하기관에 건설기계를 임대하거나 도급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임대 또는 공사완료후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9조(사용료 징수) ①<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 <u>건설본부장은</u>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p>	<p>제20조(사용료의 정산) <u>종합건설사업소장</u></p> <p>.....</p> <p>.....</p> <p>.....</p> <p>.....</p>

현	개 정 안
<p>[별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p> <p>별지 목록 건설기계임대차에 관하여 <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을</u>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p> <p>(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사용신청서</p> <p><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u> 귀하</p> <p>(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p> <p><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u> (인)</p> <p>(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사용기간변경승인통지서</p> <p><u>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장</u> (인)</p>	<p>[별표 1]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p> <p>..... <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u>.....</p> <p>(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사용신청서</p> <p><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u> 귀하</p> <p>(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p> <p><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u> (인)</p> <p>(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사용기간변경승인통지서</p> <p><u>충청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u> (인)</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